

瑞山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1999. 2. 19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1999. 2. 19
- 라. 上程日字 : 1998. 2. 26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稅務課長 安光來)

가. 提案理由

- 지난 '98. 12. 3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액이 인하되고,
 - 일부세목의 과세표준, 세율, 기타 조례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제명을 『서산시세조례』에서 『서산시시세조례』로 변경
-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세율의 범위중 당초 “골프장, 고급선박”에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고급선박”으로 함 (조례안 제27조 제1항).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 7단계를 5단계로 축소하여 2,000시시이하는 단계별로 시시당 20원씩 인하하고, 2,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시시당 220원으로 단일화 함(조례안 제37조 제1항).
- 자동차세의 연세액 일시납부신고 기간을 명문화 함(조례안 제73조 제2항).
- 소액부징수가 2,000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자동차세액 계산액 1,000원 미만에서 2,000원 미만으로 조정함(조례안 제39조 제3항).
-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별 과세표준과 세율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맞게 각각 세분화하여 정함.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조례안 제37조 제1항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세율적용에 있어 현행 7단계를 5단계로 축소하며, 2,000시시 이하는 단계별로 시시당 20원씩 인하하고, 2,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시시당 220원으로 단일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이 조례개정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세액의 감소액은 얼마나 되는지와
- 조례안 부칙 제2항에 제39조 제3항의 경우 '99년 1월 1일부터 적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
 - 개정조례 시행시까지 이미 부과징수된 사례가 있는지와 부과징수된 자동차세 납부금액과 처리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없었음.

5. 討 論 : 없었음.

6. 少數意見 : 없었음.

7.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 | |
|-------|---------------------|
| 의안번호 | 제 5 / 호 |
| 의결년월일 | 1999. 2. . (제 회) |

서산시 세조례증개정조례안

| | |
|-------|-------------|
|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 제출년월일 | 1999. 2. 19 |

서산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51 |
|----------|----|

제출년월일 : 1999. 2. / 9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98.12.31, 법률 제5615호)되면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액이 인하되는 등 그 개정 내용의 범위안에서 과세표준, 세율, 기타 조례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세율의 범위를 당초 “골프장, 고급선박”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고급선박”으로 함(안 제27조제1항).
- 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 7단계를 5단계로 축소하여 2,000시시이하는 단계별로 시시당 20원씩 인하하고, 2,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시시당 220원으로 단일화 함(안 제37조제1항).
- 다. 자동차세의 연세액 일시납부 신고기간을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1기분 납기중에는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납부 기간에는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또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로 신고기간을 명문화 함(안 제73조제2항).
- 라. 소액부 징수가 2,0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자동차세액 계산 시도 “1,000원미만”에서 “2,000원미만”으로 조정함(안 제39조제3항).
- 마.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별 과세표준과 세율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맞게 각각 세분화하여 정함(안 제73조제2항, 제74조제3항).

3. 잡 고

가.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3조

나. 참고자료 : 충청남도 세정 13400-1630, 세정 13400-1678

서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산시세조례”를 “서산시시세조례”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나목중 “골프장”을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 가목 중 “고급선박”을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영 입 용 | | 비 영 입 용 | |
|-----------|-------|-----------|-------|
| 배 기 량 | 시시당세액 | 배 기 량 | 시시당세액 |
| 1,000시시이하 | 18원 | 800시시이하 | 80원 |
| 1,500시시이하 | 18원 | 1,000시시이하 | 100원 |
| 2,000시시이하 | 19원 | 1,500시시이하 | 140원 |
| 2,500시시이하 | 19원 | 2,000시시이하 | 200원 |
| 2,500시시초과 | 24원 | 2,000시시초과 | 220원 |

제38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 제1기분 기간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 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또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제39조제3항중 “1,000원”을 “2,000원”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법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제74조제3항제2호중 “골프장·별장·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서산시세조례>

| 현 | 개 |
|---|---|
| <p>제명 서산시세조례</p> <p>제27조(세율) ①재산세 세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건축물</p> <p>가. (생략)</p> <p>나.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작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p> <p>다, 라 (생략)</p> <p>2. 선박</p> <p>가. 고급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50</p> <p>나. (생략)</p> <p>3. (생략)</p> <p>②(생략)</p> <p>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승용자동차</p> <p><신설></p> | <p>제명 서산시시세조례</p> <p>제27조(세율)① -----</p> <p>-----</p> <p>1.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p> <p>다, 라 (현행과 같음)</p> <p>2. -----</p> <p>가.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p> <p>나.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p> <p>-----</p> <p>-----</p> <p>1. -----</p> <p>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p> |

신 · 구조문 대비표

<서산시세조례>

| 현행 | | | | 개정안 | | | |
|-----------|-----------|-----------|-----------|-----------|-----------|-----------|-----------|
| 영업용 | | 비영업용 | | 영업용 | | 비영업용 | |
| 배기량 | 씨씨당 세액 | 배기량 | 씨씨당 세액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 1,000씨씨이하 | 18원 | 800씨씨이하 | 100원 | 1,000시시이하 | 18원 | 800시시이하 | 80원 |
| 1,500씨씨이하 | 18원 | 1,000씨씨이하 | 120원 | 1,500시시이하 | 18원 | 1,000시시이하 | 100원 |
| 2,000씨씨이하 | 19원 | 1,500씨씨이하 | 160원 | 2,000시시이하 | 19원 | 1,500시시이하 | 140원 |
| 2,500씨씨이하 | 19원 | 2,000씨씨이하 | 220원 | 2,500시시이하 | 19원 | 2,000시시이하 | 200원 |
| 2,500씨씨초과 | 24원 | 2,500씨씨이하 | 250원 | 2,500시시이하 | 19원 | 2,000시시이하 | 200원 |
| | | 3,000씨씨이하 | 310원 | 2,500시시초과 | 24원 | 2,000시시초과 | 220원 |
| | | 3,000씨씨초과 | 370원 | | | | |

2. ~6. (생략)
② (생략)

제38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②(생략)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신 · 구조문 대비표

<서산시세조례>

| 현 | 개 |
|---|---|
| 영 | 정 |
| 안 | 안 |
| <p><신 설></p> <p><신 설></p> <p>④ (생 략)</p> <p>제39조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제73조 (과세표준) ①(생 략) ②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영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격은 이를 합하지 아니한다.</p> <p>1.~4. (생 략) 5. 골프장,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영제194조의15 제3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p> | <p>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p> <p>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또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p> <p>④ (현행과 같음)</p> <p>제39조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2,000원----- -----</p> <p>제73조 (과세표준)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p> <p>1.~4. (현행과 같음) 5.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p> |

신 · 구조문 대비표

<서산시세조례>

| 인 영 | 개 정 안 |
|--|---|
| <p>6. (생 략) ③ 및 ④ (생 략)</p> <p>제74조 (세율) ① 및 ② (생 략) ③ 제73조제2항제3호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상 토지”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p> <p>1. (생 략) 2. <u>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u>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3. (생 략)</p> | <p><u>동향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 용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법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u></p> <p>6. (현행과 같음) ③ 및 ④ (현행과 같음)</p> <p>제74조 (세율) ① 및 ② (현행과 같음) ③ ----- ----- ----- -----</p> <p>1. (현행과 같음) 2. <u>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u> : ----- 3. (현행과 같음)</p> |